
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□ 위반차량내역

연번	당 사 자		위 반 사 항			비 고
	성 명	주소(사용본거지)	차량번호	위반내용	위반법규	
1	노금식	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0-2 신화빌라 2동 201호	인천31고 1763	봉인탈락	제10조제3항	
2	나병선	인천시 서구 석남동 554-40 (36/2) 엑스포빌라 8가동 B01호	08러1594	후미등 착색	제29조제1항	
3	김용희	인천시 서구 가정1동 298 (9/5)	28러1300	후미등 착색	제29조제1항	
4	라성일	인천시 서구 원당동 567 (12/4) 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108동 1104호	02가9836	뒤보조범퍼불법부착, 후미등착색	제29조제1항	
5	김용현	인천시 서구 왕길동 273-5 (49/1) 원흥아파트 101동 604호	89가5404	타이어돌출	제34조	
6	김봉식	인천시 서구 가좌3동 111-37 (8/1) 1층	인천30노 6077	불법 개조(차체임의변경 으로 인한 등화장치 변경)	제34조	
7	박홍섭	인천시 서구 심곡동 325-15 (50/3) 에스원홈타운 105동 103호	인천83바 2566	봉인탈락	제10조3항	
8	김종환	인천시 서구 심곡동 285 (28/4) 대동아파트 105동 2008호	86노7318	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제거함	제34조	
9	전용일	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60블럭 1,2롯데 (16/4) KCC스위첸아파트 512동 1504호	86부1281	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제거함	제34조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939호

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
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21세기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·기업·구가주체가 되어 조직된 “푸른희망 서구21”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“추진협의회”를 “실천협의회”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로 함.
-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
- 위원수를 현행 “100인 이내”에서 “150인 이내”로 증원하며, 서구의회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 근거 마련.
-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둌.
- 협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근거 마련.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040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
개 정 이 유	○ 21세기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·기업·구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“푸른희망서구21”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“추진협의회”를 “실천협의회”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. - 협의회 조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증원하고 협의회회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감사를 신설. - 무보수의 봉사자인 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수당 등 실비보상을 위한 지급근거 마련.
주 요 내 용	○ 조례명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함. ○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○ 위원수를 현행 “100인 이내”에서 “150인 이내”로 증원하며, 서구의회 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 근거 마련. ○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둬. ○ 협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 근거 마련.
개 정 안	“ 별 지 참 조 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 별 지 참 조 ”
관 계 법 령 발 체	“ 해 당 없 음 ”
관 련 사 업 계 획	“ 해 당 없 음 ”
예 산 수 반 사 항	“ 별 지 참 조 ”
기 타 참 고 사 항	“ 해 당 없 음 ”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푸른 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푸른희망서구21”을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”로 하고 “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”를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호와 제3호 중 “푸른희망서구21”을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”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100인”을 “150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푸른희망서구21”을 “푸른 희망 서구의제21”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구에 주소를 둔 기업이나 단체는 해당 기업의 대표나 단체장을 말하며, 전문가는 서구 주민이어야 한다.

③ 협의회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총무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도시관리국장, 기획홍보실장을 운영위원으로, 지역경제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, 문화체육과장, 환경보전과장, 청소행정과장, 건설과장, 도시개발과장을 분과위원으로 한다.

제7조 제4호 중 “제5조 제2항의 의장단”을 “의장단 및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20인 이내”와 “호선”을 “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, 위원 2인 및 구의회 의원 2인 이내와 당연직 공무원 등 30인 이내”와 “선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4호 중 “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”를 “총회에 준하는 중요한 안건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, 위원에 대한 위·해촉 심의

제10조 제1항 중 “5개”를 “6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감사) ①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,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집행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15조(중전의 제14조) 중 “7일”을 “14일”로 한다.

제18조(중전의 제17조) 중 “푸른희망서구21”을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”로 한다.

제19조(중전의 제18조)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수당과 여비) 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의제행사 참석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(이하 "서구"라 한다)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<u>푸른희망 서구21</u>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<u>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</u>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푸른희망 서구21"이라 함은 서구의 주민·기업·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 · 기업 · 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. 2. (생략) 제3조(사업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<u>푸른희망 서구 21</u>의 작성 및 실천추진에 관한 사항 2. (생략) 3. <u>푸른희망 서구21</u>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·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. (생략) 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한다), 기업대표,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<u>10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은 <u>푸른희망 서구21</u>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, 관련분야 공무원, 학계, 기업, 구의회 의원, 기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 <단서 신설>	제1조(목적) _____ _____ _____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</u> _____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</u> _____ _____. 제2조(정의) _____ _____. 1.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</u> _____ _____ _____ _____. 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사업) _____ _____. 1.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</u> _____ _____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</u> _____ _____ 4. (현행과 같음) 제4조(협의회의 구성)①_____ _____ <u>150인</u> _____. ②_____ <u>푸른희망 서구의제21</u> _____ _____ _____ _____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③<신설> ④(중전의 제3항) 제7조(위원의 해촉) 공동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기타 제5조 제2항의 의장단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 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) ①(생략) ②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. <신설> 6. (중전의 제5호)	다만, 서구에 주소를 둔 기업이나 단체는 해당 기업의 대표나 단체장을 말하며, 전문가는 서구 주민이어야 한다. ③협의회는 당연직 무원으로 총무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도시관리국장, 기획홍보실장을 운영위원으로, 지역경제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, 문화체육과장, 환경보전과장, 청소행정과장, 건설과장, 도시개발과장을 분과위원으로 한다. ④(현행과 같음) 제7조(위원의 해촉) _____ _____ _____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__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 _____ _____ 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_____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, 위원 2인 및 구의회 의원 2인 이내와 당연직 공무원 등 30인 _____ 선출 _____. ③_____ _____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총회에 준하는 중요한 안건의 _____ _____ 5.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, 위원에 대한 위·해촉 심의 6.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분과위원회) ①협의회는 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<신설> ③(중전의 제2항) 제11조 <신 설>	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_____ _____ _____ 6개 _____ _____ ②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(현행과 같음) 제11조(감사) ①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,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. ② 감사는 협의회와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12조(중전의 제11조)	제12조(현행과 같음)
제13조(중전의 제12조)	제13조(현행과 같음)
제14조(중전의 제13조)	제14조(현행과 같음)
제15조(의안의 처리결과 통보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공동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15조(의안의 처리결과 통보) _____ _____ _____ 14일 _____ _____
제16조(중전의 제15조)	제16조(현행과 같음)
제17조(중전의 제16조)	제17조(현행과 같음)
제18조(사업계획서 제출)협의회는 “푸른희망 서구21”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	제18조(사업계획서 제출)_____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” _____ _____ _____
제19조(재정지원 등) ①구청장은 협의회와 사업계획서를 검토 분석하여 “푸른희망 서구21”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<신 설>	제19조(재정지원 등) ① _____ _____ “푸른희망 서구의제21” _____ _____ _____ ② (현행과 같음) 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 <신 설>	제20조(수당과 여비) ①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 연직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의제행사 참석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1조(종전의 제19조)	제21조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941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(안) 입법예고****1. 제정 이유**
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**가. 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**

- 국가보훈대상자 표창
- 보훈관련 기념일·제기행사와 명절 등에 위로·격려
-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등

나. 제6조(보훈단체 비용보조)

- 단체운영 및 시설전립 - 전적지 순례 - 복지향상 사업 추진

다. 제7조(복지지원)

- 구와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·관리하는 사용료·입장료·주차료 감면
- 쓰레기봉투 무상지원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92) 및 FAX(560-4979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훈단체”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서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모든 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,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
5.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보훈관련 기념일·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·격려
7. 국가 또는 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

제6조(보훈단체 비용보조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1.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
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
3.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

제7조(복지지원)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·관리하는 시설 사용료·입장료·주차료 감면
2. 쓰레기봉투 무상지원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942호

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회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 정비와 해촉에 관한 사항 삽입(제4조 회원의 임기)
- 담당팀 변경으로 제9조(간사와 서기) 부분 정비

2. 주요내용

- 회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간사를 건강증진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족보건담당에서 건강증진 담당팀장으로 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: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전화:560-5070, FAX: 560-502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회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회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건강증진 담당팀장으로 정하며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생략 제2조(기능) 생략 제3조(구성) 생략 제4조(회원의 임기) <u>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회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.</u>	제1조(목적) 현행과 같음 제2조(기능) 현행과 같음 제3조(구성) 현행과 같음 제4조(회원의 임기와 해촉) ① <u>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 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 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 간으로 한다.</u> ② <u>구청장은 회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</u>
제5조~제8조 (생략) 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생략 ② <u>간사와 서기는 겸직하며 가족보 건담 당으로 정한다.</u>	제5조~제8조 (현행과 같음) 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현행과 같음 ② <u>간사는 건강증진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 는 건강증진 담당팀장으로 정하며 협의회 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</u>
제10조~제11조 (생략)	제10조~제11조 (현행과 같음)